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2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전진숙·박홍배·백혜련

김 윤・임호선・김한규

이수진 · 남인순 · 서영석

이인영 · 김정호 · 박균택

김윤덕 • 이정문 • 허종식

박희승 • 이훈기 • 양부남

한창민 • 권칠승 • 박주민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8월말 기준 약 150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고, 매년 7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

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2 및 제1장의2 제목 신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사회복지사의 자격

제11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사회복지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사회복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단서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2050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사 실태 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장의2 사회복지사의 자격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
소 등) ① ~ ④ (생 략)	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
	사가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
	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u>있다.</u>
<u><신 설></u>	제13조의2(사회복지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사회복지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
	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u>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
	2항 단서의 보수교육을 받지
	<u>아니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u>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u>수 있다.</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률 제2050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④ (생 략)

<u>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법률 제2050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3항,
③・④ (현행과 같음)